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손자녀돌봄수당 지급 근거 마련 등 〉
■ 김장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034호)

2025. 9.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손자녀돌봄수당 지급 근거 마련 등	3
※ 참고자료	15
1. 아이돌봄서비스사업 개요	15
2. 아이돌봄지원사업 주요통계	1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장겸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6. 24.
3. 회 부 일 : 2025. 6.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아이를 직접 돌볼 여력이 부족한 부모를 위해 아이돌봄사 등 돌봄 전문인력을 통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다수의 가정이 낮선 타인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에 대한 불안감, 돌봄서비스 인력 부족에 따른 서비스 장시간 대기 등으로 인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보다는 조부모에게 아이돌봄을 맡기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음. 따라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손자녀 돌봄에 따른 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있으나, 현행 법에는 손자녀돌봄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손자녀돌보미로 등록하여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 대해 손자녀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일·가정 양립과 양

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9조, 제19조의3 및 제35조).

Ⅲ. 검토의견

1. 손자녀돌봄수당 지급 근거 마련 등

개정안은 손자녀돌보미를 아이의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보호 및 양육하는 아이의 조부모로서 교육과정 이수 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자녀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신설, 제9조, 19조의3 및 제35조제2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932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0932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육아도우미”란 제7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 람을 말한다. <단서 신설>	5. ----- ----- ----- ----- ----- <u>다만, 손자녀 돌보미는 제외한다.</u>
6. (생략) <신설>	6. (현행과 같음)
	7. <u>“손자녀돌보미”란 아이의 부모 를 대신하여 아이를 보호 및 양 육하는 아이의 조부모로서 제19 조의3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u>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932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특별 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는 <u>아이돌봄사 의 양성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 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 하여야 한다.</u> ②·③ (생략) <u><신설></u>	<u>한다.</u> 법률 제20932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 ----- ----- -----<u>아이돌봄사</u> <u>의 양성 및 손자녀돌보미의 교육</u> ----- ----- -----. ②·③ (현행과 같음) <u>제19조의3(손자녀돌보미의 교육·등 록 및 손자녀돌봄수당) ① 손자녀 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아이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u> <u>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손 자녀돌보미에게 돌봄대상 아이의 연령, 수 등을 고려하여 손자녀돌 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u> <u>③ 제2항에 따른 손자녀돌봄수당 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에 따른 양육수당과 중복하여 지</u>

현행	개정안
제35조(벌칙)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략) <u><신설></u> 6. 7. (생략)	급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수과 등록의 방법·절차, 제2항에 따른 손자녀돌봄수당 지급의 기준, 금 액 및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5. (현행과 같음)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손 자녀돌봄수당을 지급받거나 타 인으로 하여금 지급받게 한 자 7. 8.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

현행법 제2조제4호·제5호¹⁾는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보
호 및 양육 등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자격 여부에 따라
아이돌보미와 육아도우미로 구분하고 있음.

- 1)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육아도우미”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2026년 4월 23일 시행예정인 법률 제20932호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 제4호·제5호²⁾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자격증 여부에 따라 아이돌봄사와 육아도우미로 구분함.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4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미취학 자녀의 낮시간 주양육자(기관)는 기관에 맡김이 55.2%, 부모가 39.4%로, 94.6%가 기관에 맡기거나 부모가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 밖에 조부모는 4.4%로 아이돌보미(0.2%)나 지인·육아도우미 등(0.3%)에게 맡기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음.

기관에 맡기거나 부모가 양육하지 않는 경우 아이돌보미나 육아도우미 보다 조부모에 의한 돌봄방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는 자기 의사표시를 정확히 하기 어려운 아이를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맡기는 것에 대한 불안감, 돌봄서비스 인력 부족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장시간 대기 문제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2)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 2026. 4. 23.] [법률 제20932호, 2025. 4. 2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4. “아이돌봄사”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7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5. “육아도우미”란 제7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미취학 자녀의 낮시간 주양육자(기관) >

부모	부모형제 자매	조부모	기타 친인척	이웃, 지인, 민간 육아 도우미 등	기관에 맡김	공공아이 돌보미	없음	계
39.4%	0.2%	4.4%	0.2%	0.3%	55.2%	0.2%	0.1%	100%

자료: 보건복지부,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연령별 조부모 양육 비율(2024년 기준) >

(단위: %)

구분	부	모	부모 형제 자매	친조부모	외조부모	기타 친인척	이웃, 지인, 민간육아 도우미 등	공공아이 돌보미	기관에 맡김	없음	합 계
0세	4.1	69.2	0.2	1.7	3.3	0.2	0.3	0.8	19.7	0.4	100.0
1세	2.3	34.2	0.4	1.2	3.4	-	0.3	0.3	58.0	-	100.0
2세	0.7	27.0	0.3	0.8	3.2	0.2	0.4	-	67.4	-	100.0
3세	1.3	28.5	-	1.3	2.9	0.1	0.3	0.1	65.3	-	100.0
4세	2.4	29.1	-	2.6	1.3	0.6	0.4	-	63.7	-	100.0
5세	1.3	28.6	0.3	1.0	3.5	0.2	-	0.1	65.0	-	100.0
전체	2.1	37.3	0.2	1.5	2.9	0.2	0.3	0.2	55.2	0.1	100.0

자료: 보건복지부,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한편, 현행법 제20조³⁾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25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지침)」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 3)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및 부모의 취업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은 서비스의 종류, 해당 지역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한 아이돌보미(아이돌봄사)가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에 대하여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아이돌보미의 경우에도 친인척(4촌 이내)⁴⁾인 아이에게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계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바⁵⁾,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거나 돌보는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받지 못함.

< 2025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지침) >

- ▶ (p.105) ③ **활동 수당**
 - 마. 서비스제공기관에 의해 접수·연계·통보되지 않은 서비스 제공 ⇒ 활동수당 미지급
- ▶ (p.106) ② **활동정지**
 - 가. 사유
 - 친인척(4촌 이내*) 연계 또는 웃돈 요구, 부정수급 공모 시(환수조치 대상)
 - *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가 본인의 경증장애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는 연계 가능
- ▶ (p.123) ② **서비스 연계 및 안전관리**
 - 다. 연계 시 고려사항
 - **친인척(4촌 이내*) 연계 불가 안내**(친인척 연계 의심 시 아동이 아이돌보미 기준 4촌 관계인지 확인)
 - *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가 본인의 경증장애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는 연계 가능
- ▶ (p.172~173) ⑤ **정부지원금 환수 및 벌금 부과**
 - 사유
 - **아동기준 4촌 이내 친인척 연계 적발 시**
 - *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가 본인의 경증장애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는 연계 가능
 -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환수 조치
 - 허위·과다 신청 및 4촌 이내* 연계의 경우, 조정위원회 자료 제출·소명 또는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아이돌보미와 이용자로부터 개별 환수
 - *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가 본인의 경증장애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는 연계 가능

4)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가 본인의 경증장애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는 연계 가능

5) 여성가족부의 2025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에 따르면, 아이돌보미 활동정지 사유에 “친인척(4촌 이내) 연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서비스제공기관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를 고려사항에 “친인척(4촌 이내) 연계 불가 안내”를 포함하고 있음.

이처럼 기관에 맡기거나 부모가 양육하지 않는 경우 아이돌보미 보다 조부모에 의한 돌봄방식을 더 선호하고 있음에도 조부모가 돌보는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은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재 서울특별시, 경기도, 경상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조부모에 의한 손자녀돌봄에 대하여 손자녀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해당 지역 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지역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 현행 지방자치단체 조부모 손자녀 돌봄수당 지원현황 >

구 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 원 조 건	아동연령	24개월 ~ 36개월 아동	6세 이하 아동	24개월 이하 아동
	지원조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소득 무관
	돌보미 조건	조부모등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민간업체	70세 이하 (외)조부모 원칙(70세 초과 희망자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외)조부모
	조부모 교육	2시간(온라인)	20시간(집합교육)	22시간(집합교육)
지 원 액	유형·지원금액	1명 월 30만원 2명 월 45만원 3명 월 60만원	종일돌봄 월 30만원 (1일 8시간 이상 돌봄)/ 시간제돌봄 월 20만원 (1일 4시간 이상 돌봄)	월 30만원 한도

구 분		경기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지 원 조 건	아동연령	24개월 ~ 48개월 아동	24개월 ~ 35개월 아동	24개월 ~ 36개월 아동
	지원 조건	소득 무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돌보미 조건	조부모등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 (경기도민)	(외)조부모	(외)조부모
	조부모 교육	260분(온라인)	4시간(온라인)	연 2회(집합교육)
지 원 액	유형· 지원금액	1명 월 30만원 2명 월 45만원 3명 월 60만원	1명 월 20만원 2명 월 30만원 3명 월 40만원	1명 월 30만원 2명 월 45만원 3명 월 60만원

자료: 여성가족부

이에 개정안은 조부모가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고 손자녀돌보미로 등록된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손자녀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역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돌봄 부담 경감 및 손자녀돌봄 활성화를 통하여 일·가정 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개정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자녀돌보미에게 손자녀돌봄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 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총 4,321억원(연평균 864억원)으로 예상됨⁶⁾.

다만, 현행법 제20조는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소득 요건 외에는 별도의 제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여성가족부는 지침을 통하여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한 아이돌보미가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한정하고, 아이돌보미가 친인척(4촌 이내)인 아이에게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계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바,

여성가족부는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한 자격요건, 서비스 이용 시간, 아이돌보미의 결격사유 등의 확인과 관리가 가능하고, 아이돌보미가 친인척(4촌 이내)인 경우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관계가 가족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실제 돌봄 여부나 서비스 제공 시간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음.

개정안과 같이 손자녀돌봄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부정수급 관리

6)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손자녀돌봄수당 지급 (안 제19조의3 신설)	839	843	857	878	905	4,321	864

주: 1. 지원대상이 되는 손자녀돌보미의 범위, 서비스 비용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추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2. 개정안에 따른 손자녀돌봄수당 지급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나 현시점에서 손자녀돌봄수당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알 수 없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국비와 지방비를 구분하지 않고 추가재정소요의 총액만 제시함

※ 0세~1세 영유아는 지원단가(월 18만원)를 적용하고,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2세 이상 5세 이하 영유아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손자녀돌봄수당 지급액 단가에서 차감(월 8만원)하여 적용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에 동일한 어려움이 있다는 점과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과 달리 소득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조부모가 실제 손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의 가정만 수혜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개정안에 대한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으며, 서울 용산구 등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손자녀돌봄수당에 대한 부정 수급 관리가 어려워, 조부모에게 현금성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남용될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 관계기관 의견 주요 내용 >

기관	의견 주요 내용
여성가족부	[신중검토] 서비스 실제 제공여부 확인 등 부정수급 관리상 어려움이 있고, 조부모가 실제 손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의 가정만 사업의 수혜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개별 가정에 대한 현금성 지원은 공적 돌봄체계 정착 및 돌봄의 국가책임 실현이라는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 고려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	[신중검토] - 손자녀돌보미 신설은 현행 보육지원 체계와의 중복성 등 감안 시 신중검토 필요 - 현재 양육지원을 위해 아동수당(아동수당법) 지원 중이고, 지원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중복 - 또한, 실제 양육여부 확인이 어려운 점 등 고려시 부정수급 발생 등 제도 운영상 문제도 발생 가능
서울 용산구	[신중검토] 「아이돌봄 지원법」은 전문 인력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나 손자녀 돌봄은 조부모에게 현금성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상의 이질성 있으며, 아이돌보미 인력을 양성 운영 관리하는 운영방식과 가족 구성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운영

기관	의견 주요 내용
	방식은 차이가 있음 - 손자녀돌봄수당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부정 수급 비율 및 모니터링 인력부족 등)에 비추어 신중하게 제도를 검토해야하는 사항으로 인식됨
서울 성동구	[신중검토] • 손자녀돌보미의 교육 - 현행 교육기관은 아이돌봄사(현행: 아이돌보미)의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을 담당하고 있어 손자녀돌보미의 교육 병행 운영 시 교육품질 저하가 우려 - 교육 내용의 동질성, 행정효율, 전국 일관성 등을 감안한 운영 및 교육 인원 관리 필요 • 손자녀돌보미 등록·관리 ○ 기존 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침 활용 검토 필요 -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가 본인의 ‘경증장애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친인척 연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도 신설보다는 기존 제도를 활용 및 보완하는 것이 적절 - 아이돌봄사는 별도 사업장에 채용된 근로자 신분으로 관련 법령(산재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으나 손자녀돌보미의 경우 가족 내 돌봄성격으로 제3자를 통한 배상 등 보호 불가, 상해보험 등이 고려될 수 있으나 도덕적 해이 우려 있음 • 손자녀돌봄수당 활동 ○ 부정수급 및 도덕적 해이 우려 - 명목상 조부모 등록 후 수당을 청구하는 가족 내 소득 이전의 대체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음 ○ 수당 지급 관리를 위한 추가 행정비용 발생 - 기존 아이돌봄서비스와 운영 체계가 달라 활동 확인, 타 수당과의 중복 검증, 부정수급 관리 등을 위한 별도 시스템 관리 필요
서울 서대문구	[신중검토] • 손자녀돌보미라는 새로운 개정안보다 기존 사업(서울형아이돌봄비)이 더 편리하고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개정안과 같이 현장 교육을 받거나 지자체에 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앱으로만 교육을 듣고(2시간) 돌봄 인증만 하면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돌봄 인증을 할 수 있는 앱도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시스템 구축해 놓고 있고 관리 부서도 따로 있어 기존의 사업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기관	의견 주요 내용
서울 종로구 가족센터	[신중검토] • 「아이돌봄 지원법」은 전문 인력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나 손자녀 돌봄은 조부모에게 현금성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아이돌봄 지원법의 법 체계상 이질적임 - 또한 전문인력인 아이돌봄사를 관리하여 파견하는 운영 방식과 가족구성원 등록 및 수당 지급은 기존체계와 충돌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손자녀돌봄수당 제도는 별도의 조항 신설 또는 「영유아보육법」, 「사회보장기본법」, 혹은 새로운 「가족돌봄지원법」 제정을 통해 규율하는 것이 입법 목적과 체계에 더 부합함
경기도 용인시	[신중검토] • 조부모가 손자녀돌보미라고 법제화하는 것은 조부모에게 돌봄의무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사적관계를 공적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손자녀돌보미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이수해야하지만, ‘아이돌봄사’와 비교해 실제로 교육내용과 실천기준이 조부모에게 얼마나 지켜질지 불투명으로 돌봄 전문인력을 통한 아이돌봄서비스를 규정한 법 취지에 맞지 않음 - 이미 아이돌봄서비스,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다양한 공적 지원체계가 존재하는 가운데 조부모수당 지급은 복지의 중복과 지역별·가정별 형평성 문제 초래 - 개인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녀 돌봄으로 부정수급 점검 위한 인적·제도적 시스템이 필요
제주 특별자치도	[수정수용] • 아이를 돌보는 친인척까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조항 수정 • 손자녀 돌봄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

자료: 여성가족부

문 의 처

02)6788-5649

【참고자료 1】

아이돌봄서비스사업 개요

□ 추진 개요

- (목적) 맞벌이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 대상 아이돌보미 파견을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으로 저출산 해소에 기여
- (근거) 아이돌봄 지원법('12.8.17 제정)

□ 주요 내용

- (사업내용) 시간제 돌봄(만 12세 이하 아동), 영아종일제 돌봄(만 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제) 취학전·후 구분, 연 지원시간 960시간 한도 지원
 - (종일제) 0~2세 자녀 대상 월 최대 200시간(연간 2,400시간) 지원
- (정부지원) 이용가정의 소득유형(가~마형)에 따라 차등지원

[2025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시간당 이용요금 : 12,180원)]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 취학전		취학후		다자녀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354원(85%)	1,826원(15%)	9,136원(75%)	3,044원(25%)	본인부담금의 10% 할인
나형	120% 이하	7,308원(60%)	4,872원(40%)	4,872원(40%)	7,308원(60%)	
다형	150% 이하	3,654원(30%)	8,526원(70%)	2,436원(20%)	9,744원(80%)	
라형	200% 이하	1,828원(15%)	10,352원(85%)	1,218원(10%)	10,962원(90%)	
마형	200% 초과	- 12,180원(100%)		- 12,180원(100%)		

* 휴일 및 야간(22시~익일 06시) 이용요금의 50% 가산

** ㉠형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조손 가정에는 5% 추가 지원

*** 0~1세 자녀가 있는 청소년 부모·청소년 한부모 가정(중위소득 150% 이하)은 이용요금의 90% 지원

자료: 여성가족부

【참고자료 2】

아이돌봄지원사업 주요통계

☐ (시간당 단가) '25년 12,180원

☐ (정부지원) 이용가정의 소득유형별 차등지원

○ 2024년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24년 이용가구 (비율)	정부지원비율	
			0세~5세	6세~12세
가형	75% 이하	65,730 (56.3%)	85%	75%
나형	120% 이하	30,392 (26.0%)	60%	20%
다형	150% 이하	5,998 (5.1%)	15%	15%
라형	150% 초과	14,662 (12.6%)	-	-

○ 2025년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비율	
		0세~5세	6세~12세
가형	75% 이하	85%	75%
나형	120% 이하	60%	40%
다형	150% 이하	30%	20%
라형	200% 이하	15%	10%
마형	200% 초과	-	-

☐ (이용 가구)

계	시간제	영아종일제	일시연계 등
'24년 118,126	70,021 (59.3%)	1,155 (1.0%)	46,950 (39.7%)

☐ (이용 아동)

이용아동(연령)	계	0세	1세	2세	3~5세	6~12세
'24년 (명)	111,595	19,972(17.9%)	15,155(13.6%)	13,112(11.7%)	33,696(30.2%)	29,660(26.6%)
'23년 (명)	105,740	18,662(17.6%)	14,132(13.4%)	12,029(11.4%)	32,435(30.7%)	28,468(26.9%)
'22년 (명)	98,582	18,604(18.9%)	12,730(12.9%)	11,315(11.5%)	29,964(30.3%)	25,969(26.3%)

☐ (아이돌봄미)

구분		활동돌봄미		양성교육		채용	
'24년 (명)		29,635		8,901		3,837	
연령(명)	40세미만	40세이상 ~	45세이상 ~	50세이상 ~	55세이상 ~	60세이상 ~	65세이상 ~
29,635	112(0.4%)	329(1.1%)	1,355(4.6%)	4,522(15.3%)	8,222(27.7%)	8,959(30.2%)	6,136(20.7%)

☐ (서비스제공기관) '25년 기준 232개소

계	가족센터	지자체 직영	기타
232	177	7	48

☐ (광역지원센터) '25년 기준 17개소

☐ (교육기관) '25년 기준 62개소

자료: 여성가족부